2023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2024. 2.

여성가족위원회

목 차

I. 감사의 목적 ······ 1
Ⅱ. 감사기간
Ⅲ. 감사실시 대상기관 1
IV. 감사실시 경과 ······ 2
1. 감사반 편성 ······· 2 2. 감사일정 및 감사장소 ······ 4
V. 증인 및 참고인 현황 ······ 5
N. 주요감사 실시사항······ 6
1. 여성가족부 6
2.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24
3.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24
4. 한국건강가정진흥원 25
5. 한국여성인권진흥원 26
Ⅶ. 국정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27
1. 여성가족부 ····· 27
2.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36
3.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37
4. 한국건강가정진흥원 37
5. 한국여성인권진흥원 38

2023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헌법 제61조, 「국회법」 제127조 및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여성가족위원회가 실시한 소관 부처에 대한 국정감사 결과를 아래와 같이 보고함.

I. 감사의 목적

「헌법」 제61조, 「국회법」 제127조 및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여성가족위원회 소관 기관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함으로써 국정운영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법률안 및 2024년도 예산안 등을 심도 있게 심사하기 위한 자료를 수집하고, 국정의 잘못된 부분을 시정 요구함으로써 헌법에서 국회에 부여한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함.

Ⅱ. 감사기간

○ 2023. 11. 2(목), 11. 3(금) [2일간]

Ⅲ. 감사실시 대상기관

위원회선정 대상기관 (국정감·조사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호·제3호)	본회의승인 대상기관 (국정감·조사에 관한 법률 제7조제4호)			
여성가족부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한국건강가정진흥원 한국여성인권진흥원 (6개 기관)	_			
총 6개 기관				

Ⅳ. 감사실시 경과

1. 감사반 편성

○ 여성가족위원회위원 전원으로 감사반을 편성함.

○ 감사반 : 17인

구 분	교섭단체(정당)	위 원 명	비고
감사반장	더불어민주당	권 인 숙	위원장
감사위원	더불어민주당	신 현 영	간 사
		김 한 규	
		문 정 복	
		양 경 숙	
		양이원영	
		이 원 택	
		장 경 태	
		한 준 호	
		허 숙 정	
	국민의힘	정 경 희	간 사
		김 미 애	
		조 은 희	
		지 성 호	
		최 승 재	
		최 연 숙	
	기본소득당	용 혜 인	

ㅇ 사무보조자

구 분	직 위	성 명	비고
	수석전문위원	김 수 옥	
	여성가족정책 입법심의관	이 은 정	
	여성가족정책 입법조사관	최 유 순	
	여성가족정책 입법조사관	이 주 연	
	행정실장	표 승 연	
	여성가족정책 입법조사관	박 형 진	
	여성가족정책 입법조사관	황 명 숙	
	행정관	김 안 희	
사무보조자	주무관	최 경 희	
	행정관	이 민 회	
	의정기록 주무관	최 정 민	
		신 재 선	
		정 숙	
	정책연구위원	김 혜 연	더불어민주당 (4급상당)
		공 미 회	국민의힘 (4급상당)

2. 감사일정 및 감사 장소

일 시	대 상 기 관	장 소	감사반
11.2(목) 10:00	 ○ 여성가족부 ○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 한국건강가정진흥원 ○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여성가족위원회 회 의 실 (본관 550호)	위원 전원
11.3(금) 10:00	○ 현장시찰	서울시 노원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위원 전원

V. 증인 및 참고인 현황

1. 여성가족부 : 11인

연번	직 위	성 명	출석일시	출석장소	비고
1	장 관	김현숙	2023.11.2.(목) 10:00	국회 여성기족위원회 회의실(본청 550호)	
2	차 관	이기순	"	"	
3	기획조정실장	황윤정	"	n,	
4	청소년가족정책실장	박난숙	"	"	
5	여성정책국장	김종미	"	"	
6	권익증진국장	최성지	"	n	
7	대변인	조민경	"	"	
8	정책기획관	김가로	"	"	
9	청소년정책관	김권영	"	n,	
10	가족정책관	김숙자	"	n,	
11	운영지원과장	양철수	"	"	

2. 산하기관 : 5인

연번	기 관	직 위	성 명	출석일시	출석장소	비고
1	한국양성평등 교육진흥원	원 장	장명선	2023.11.2.(목) 10:00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회의실(본청 550호)	
2	한국청소년 활동진흥원	이사장	손연기	"	n	
3	한국청소년 상담복지개발원	이 사 장	윤효식	"	n,	
4	한국건강가정 진흥원	이 사 장 직무대행	전주원	"	n	
5	한국여성인권 진흥원	원 장	신보라	n	"	

VI. 주요감사 실시사항

1. 여성가족부

가. 여성정책

(양성평등)

- o 학교현장 교원의 성비 불균형이 점점 심각해지고 있으므로, 양성평등 문화를 확산하기 위하여 초등교사 성비 불균형 문제에 대한 진단과 개 선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o 여성가족부와 성별균형 포용성장 파트너십을 체결한 기업에서 육아휴 직 불이익 사건이 발생하였으므로, 성별균형 포용성장 파트너십을 체 결한 기업들의 근로기준법 위반, 모부성제도 관련법 위반 등에 대하여 관리하고 제재할 필요가 있음.

(공중화장실 영유아 시설)

o 공중화장실에 어린이용 대소변기, 세면대 및 영유아용 기저귀교환대 설치율이 낮으므로, 사회적 인프라를 아이돌봄 친화적으로 만들기 위 하여 공중화장실의 영유아 시설에 대한 점검을 하고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여 예산을 확보하여 공중화장실의 영유아 시설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나. 가족정책

(아이돌보미 사업)

- o 아이돌보미 처우가 열악하여 아이돌보미 양성인원 중 미입사자나 퇴사자가 많으므로, 아이돌보미 공급을 늘리고 부모들의 민간 육아도우미서비스 사용에 따른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아이돌보미 기본 근무시간 보장, 시급 현실화 등 처우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 o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법안이 국회에 계류되어 있으므로, 국회와 적극적으로 소통하여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법안을 처리하기 위해 노력을 할 필요가 있음.
- o 아이돌보미 수급상황에 비추어 볼 때 2024년 아이돌봄 지원가구를 11 만 가구로 확대하는 것은 가능성이 낮아 보이므로, 2024년 아이돌봄 지원가구를 11만 가구로 확대할 수 있는 가능성에 관한 구체적인 근거 를 제시할 필요가 있음.

(아이돌봄 통합지원 플랫폼)

- o 지난 9월부터 운영되고 있는 아이돌봄 통합지원 플랫폼이 시범운영이 나 검증 없이 시행됨에 따라 근로기록이 기록되지 않는 등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아이돌봄 통합지원 플랫폼에서 발생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o 아이돌봄 통합지원 플랫폼 2단계 구축사업은 이용시간대에 따라 이용 요금 할증 및 민간등록기관 이용 매칭까지 가능하도록 하여 아이돌봄 민영화를 위한 수순이라는 비판이 있고, 아이돌봄 민영화를 사회적 합 의 없이 추진하는 것은 저출산 해결을 위한 국가 책임을 방기하고 이 용자의 부담을 오히려 가중할 수 있음.

(한부모가족 지원)

o 2024년 예산안에 저소득 한부모가족 양육비 지원금액이 자녀 1인당 20만원에서 1만원 증액된 21만원으로 작게 증액되었으므로, 저소득 한 부모가족 양육비 지원금액을 증액할 필요가 있음.

(양육비 이행)

- o 양육비 채무자 명단 공개는 양육비 채권자가 여성가족부에 별도로 신청을 하여야 하는 번거로운 체계 때문에 양육비 채권자의 명단 공개 신청률이 낮고, 이름, 생년월일 및 사진 없이 주소 일부만 공개되어 실 효성이 떨어지므로, 양육비 채무자 명단 공개 절차 및 내용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 o 양육비 청구를 위한 소송대리는 양육비이행관리원의 장이 독립적으로 하지 못하므로, 양육비이행관리원이 역할과 책무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한국건강가정진흥원으로부터 양육비이행관리원을 독립할 필요 가 있음.

(저출산 대책)

o 젊은 세대들이 자녀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으며, 20대 출산율은 꾸준히 감소하고 있는 반면 40~44세의 출산율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므로, 저출산 대책에 이러한 사회적 현상을 반영할 필요가 있음.

(가족센터)

- o 가족센터에 근무하는 결혼이민자들의 처우가 열악하므로, 가족센터에 근무하는 결혼이민자들의 처우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 o 가족센터는 시·군·구 단위로 설치되어 있고,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을 통해 종사자 교육, 가족센터 운영 관리 지원, 모니터링·컨설팅 등이 수행되고 있으므로, 시·군·구 가족센터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광역 가족

센터를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o 가족센터에 근무하는 이중언어코치와 통번역사의 처우가 열악하므로, 가족센터에 근무하는 이중언어코치와 통번역사의 처우를 호봉제 적용 등을 통해 개선할 필요가 있음.

(국제결혼)

o 국제결혼중개업체의 인권침해성 온라인 불법광고가 많은데, 모니터링으로 찾아내고도 후속조치가 제대로 되지 않아 반복해서 불법광고가진행되고 있는 바, 상시적인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고, 경찰청과 협업하여 경찰청 이관 후의 후속조치까지 철저히 관리할 필요가 있음.

(한국건강가정진흥원 관리)

o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은 청사 이전으로 임차료와 관리비의 지출이 과다 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기관장 관용차 렌트비가 월 200만원으로 과다 하여 경영이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으므로, 여성가족부는 한국건강가정 진흥원의 임차료, 관리비 및 기관장 관용차 렌트비의 지출 과다 등 방 만 운영에 대하여 점검할 필요가 있음.

다. 청소년정책

(새만금 세계잼버리대회)

- o 새만금 세계잼버리대회와 관련하여 초기 운영 부실, 부지선정 문제, 기반시설 조성 등 사전 준비 부족, 수의계약 과다 및 비상대피시 실업계고등학교 취업장려금 사용 등 예산 부적정 집행, 조직위원회의 리더십부족 및 집행위원회 형식적 운영, 새만금 세계잼버리대회 후 새만금 SOC예산 삭감 문제, 여가부 관리 감독 부실, 외유성 해외 출장 문제, 프레잼버리 미실시, 문재인 정부의 새만금 세계잼버리대회 진행 차질등에 대한 논란이 제기됨.
- 아 새만금 세계잼버리 대회 관련 전체 계약의 약 30%가 대회 한 달을 앞두고 급히 체결됐으며, 잼버리 백서 발간을 맡은 업체는 전북도청 입점 문구점이, 대회 상징물 제작은 지역의 속눈썹 시술업체가 맡는 등조직위에 파견된 지자체 공무원에 의해 체결된 수의계약 면면에서 담합 의혹이 발견된 바이에 대해 예산 기안의 심의 의결을 하는 집행위와 총괄 관리를 하는 조직위에서 예산과 계약문제 관리를 어떻게 해왔는지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 o 새만금 세계잼버리 대회의 조직위 구성 관련 전문성이 없는 여가부 퇴 직공무원을 사무총장으로 임명하게 된 채용과정 및 사유의 적절성, 공 동조직위원장 선임 관련 초반 지자체의 글로벌 인사 선임 요구가 있었 음에도 정치인을 선임한 것이 적절했는지 여부에 대한 문제가 제기됨. 또한 대회 준비의 주축이었던 두 사람에 대해서도 준비 과정의 문제에 대해 질의답변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옴.
- o 새만금 세계잼버리대회 기간에 여가부 공무원들이 변산반도 생태탐방관에 숙박하여 청탁금지법 위반 소지가 있으므로, 새만금 세계잼버리대회 기간에 여가부 공무원의 변산반도 생태탐방관 숙박자 명단을 제출할 필요가 있음.

- o 새만금 세계잼버리대회 개영식 날 온열질환 등으로 참가자들이 쓰러지 는 등 혼란이 발생한 상황에서 장관이 여유 있게 식사를 한 것에 대하 여 해명을 할 필요가 있음.
- o 새만금 세계잼버리대회를 지원하기 위한 중요건물이라 할 수 있는 글로벌 청소년 리더센터가 아직도 준공되지 않았고, 새만금 세계잼버리대회를 이유로 공무원들이 부적절한 해외 출장을 간 의혹이 있으므로 엄정하게 감사하여 재발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음.
- o 새만금 세계잼버리대회시 현장 학습활동과 관련된 예산은 불용액이 거의 발생하지 않고 대부분 수의계약으로 이루어졌으므로, 새만금 세계 잼버리대회시 현장 학습활동과 관련된 예산의 업체선정 과정이나 계약 방식의 공정성 준수 여부 등에 대하여 파악할 필요가 있음.
- o 제25회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조직위원회에서 한의사협회의 한의진료센터 운영 제안을 거절하여 진료 참여를 배제하고 그로 인하여 의료대란이 발생하였으므로, 향후 국제행사를 할 때 동일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o 캐릭터 디자인과 관련하여 조직위원회의 허술한 계약으로 지역업체가 정산 증빙자료를 받지 못하고 국가 이익도 제대로 환수하지 못하고 있 으므로, 캐릭터 저작물 상품화권에 대한 계약을 체결할 때 업체와 국 가에 대한 정산·환수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청소년예산 삭감)

o 사업의 재구조화, 보조금 부정 사용 등을 이유로 청소년활동지원, 청소년국제교류지원, 청소년정책참여지원, 지자체청소년안전망팀운영, 학교 폭력예방프로그램운영, 청소년근로권익보호, 청소년방과후활동지원 등의 예산이 매칭 사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액 삭감되거나 많이 삭감되었으므로, 삭감된 청소년 관련 예산을 회복하는 등의 대안을 마련하여 보고하고 청소년예산 삭감을 원점에서 재검토할 필요가 있음.

- o 2024년 실시 예정인 청소년박람회 예산이 전부 삭감되었고, 학교 밖 청소년들의 자립역량을 향상시킬 수 있는 사회안전망인 내일이룸학교 의 예산도 전부 삭감되었으므로, 청소년박람회와 내일이룸학교의 삭감 된 예산을 회복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o 117학교폭력 신고센터 예산이 관련부처 및 현장과의 협의 없이 법적 근거가 미흡함을 이유로 전액 삭감되어 여가부 소속 상담사 34명이 일 자리를 잃게 되었으므로, 관련 부처 및 현장과 충분한 협의를 하여 117학교폭력 신고센터 예산을 회복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파견 계약을 체결하는 등 법·제도적 미비를 해소하며, 117학교폭력 신고센터에 근무하는 상담사의 처우가 열악하므로 임금 수준을 정상화하는 등 상담사의 처우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 o 여가부 상담복지센터에서 117학교폭력 신고센터로 파견한 상담사에 대하여 기간제법과 파견법 위반 시비가 있으므로, 여가부 상담복지센터에서 117학교폭력 신고센터로 파견한 상담사에 대하여 근로관계 확인을 통해, 노동부로부터 노동관계법 위반 여부에 대한 명확한 답변과향후 조치계획을 제출할 필요가 있음.

(위기청소년 지원)

- o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종사자의 임금은 다른 기관 대비 낮아 청소년상담 복지센터가 인력난을 겪고 있으며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시설이 노후 화되었으므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인력의 이직률, 평균 근무연한, 채 용 평균 소요시간, 처우개선 대책 등을 보고하고, 센터 종사자의 인건 비 현실화 및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시설의 노후화를 개선하기 위한 방 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o 우리나라 청소년 자살률이 OECD 35개국에서 네 번째로 높으나 정부의 대처가 미흡하고, 청소년사이버상담센터 상담원의 전문성이 낮으며 처우가 열악하므로, 청소년사이버상담센터 상담원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교육을 적극적으로 실시하고 처우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 o 청소년사이버아웃리치사업의 타 기관 연계율이 미미하므로, 청소년사 이버아웃리치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 음.
- o 청소년과 아동의 우울증과 불안장애가 심각한 수준이므로, 사이버 상 담원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등 위기 청소년을 위한 다양한 상담사업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청소년 상담 전반에 대한 점검을 할 필요가 있음.

(청소년유해매체물 규제)

o 청소년 유해매체물 특정 고시가 채팅앱과 관련한 고시를 제외하고 전부 2015년 이전에 고시되었으므로, 청소년 유해매체물 지정 및 관리의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청소년 유해매체물 고시를 정비할 필요가 있음.

(청소년 유해환경 개선)

- o 스터디카페 구인광고를 위장해서 청소년을 유인한 사건이 발생하였으므로, 구인광고를 위장해서 청소년을 유인하는 등 청소년이 위험에 노출된 사례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o 경의선 책거리 공원의 청소년 성매매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실태를 파악하고 진행 계획 수립 및 범죄 예방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o 최근 마약사범, 마약중독자가 증가하고 있으므로, 청소년 마약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생애주기별 마약 예방 프로그램, 치료적 사법 정책, 마약 예방 의무교육을 위한 입법 등 종합적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 음.
- o 매년 청소년유해환경 점검을 실시함에도 적발 건수가 증가하고 있으므로, 청소년유해환경 점검시 지속적으로 적발되는 업소에 대해서는 지자체와 추가적인 제재 협의 등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고 청소년 범죄가자주 발생하는 지역을 점검하는 등 계획적·체계적으로 청소년유해환경을 점검할 필요가 있음.

- o 2022년 공모로 선정된 국립 호남권 청소년디딤센터건립사업은 공모로 선정되지 않는 광주 청소년디딤센터보다 예산이나 사업 규모가 작은 문제가 있으며, 국립 호남권 청소년디딤센터건립사업이 2027년에 완공 될 계획이므로, 국립 호남권 청소년디딤센터건립사업이 당초 계획대로 완공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 o 국립 호남권 청소년디딤센터와 광주 청소년디딤센터의 차별화된 운영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학교 밖 청소년 지원)

- o 학업중단 청소년이 증가하고 있으나 고교과정 중단 학생들에 대한 정보가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로 연계되지 않고 있으므로, 학교밖청소년 지원센터에 학업중단 청소년을 연계하여 학업중단 청소년이 다양한 지원제도를 안내받고 학업 복귀 및 사회 진입을 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 o 학교 내 학생 지원금은 여유로운 반면 학교 밖 청소년 지원금은 부족 한 현실이므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의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교육부와 함께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에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사용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청소년회복지원시설)

o 청소년회복센터는 예산이 개소당 월 908만원에 불과하여 교육프로그램을 제대로 운영하지 못하고 인력의 전문성이 미흡하므로, 청소년회복센터 교육프로그램 운영과 인력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예산을 확대하여 지원할 필요가 있음.

(청소년활동지원)

o 국립청소년시설을 통해 발생하는 자체수입의 절반 이상을 임직원 인건

비로 충당하고 있으나 자체수입이 코로나19 이후 위축된 청소년활동으로 급감하였고, 청소년 및 학령인구 감소와 학교 교육과정 개편 등의 영향으로 코로나19 이전 수준의 자체수입 회복 가능성이 불투명하므로,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이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인건비 전액을 국고보조금으로 전환하여 편성할 필요가 있고, 인건비로 충당하던 자체수입을 청소년활동을 위한 사업비 및 노후 국립청소년시설 개보수 비용 등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음.

- o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은 전국에 6개의 국립청소년수련시설을 운영하고 있으나 국립청소년수련시설은 2022년도에 개원한 미래환경센터를 제외한 5개 시설이 개원한 지 10년 이상 지남에 따라 낙후되었으므로, 시설 노후화로 인한 시설 기능저하 문제해결 및 낙후된 청소년생활환경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 o 교육정책 변화를 반영하고 청소년 수련시설별 프로그램 운영 역량 및 품질 격차 해소를 위하여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이 지역별 우수 프로그 램을 선발·지원하고 다양한 채널을 확산시키는 등 청소년활동의 지속 적인 개발을 장려할 필요가 있음.

(탈북청소년 지원)

o 북한이탈청소년은 이주배경청소년 유형에 속하지 않으므로 북한이탈청 소년들을 이주배경청소년 사업에서 지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므로, 탈북청소년 지원사업을 이주배경청소년 사업과 별도로 추진할 필요가 있음.

라. 권익증진

(여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지원예산 삭감)

- o 위안부 및 가정폭력 피해자 등 피해자 지원 예산 사업 관련 사업 단체 들의 부정수급 실태 지적과 여가부의 관리 대책 개선 촉구가 있었음.
- o 여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지원예산은 가정폭력, 성폭력, 스토킹, 교제 폭력 같은 여성폭력이 급증하고 있음에도 현장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 고 삭감되었으며, 특히 가정폭력 가해자 교정프로그램 예산이 법무부 로 정확히 이관하지 않는 상태에서 전액 삭감되었으므로, 여성폭력 예 방 및 피해자 지원관련 예산의 삭감을 복원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o 여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지원예산 중에서 보조금을 부정수급하지 않은 사업의 예산을 삭감하지 않고 보충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o 5년 동안 5건의 부정수급을 이유로 현장과 소통하지 않고 가정폭력상 담소 운영지원,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의 예산이 대폭 삭감되었으 므로, 피해자 지원의 공백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가정폭력상담소 운영 지원,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의 예산을 원상복구하는 방안을 검토 하여 제대로 된 지원을 할 필요가 있음.
- o 장애학생들의 성폭력 피해는 계속해서 고발되고 있고 그 유형도 점차 다양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인권교육 예산이 전액 삭감되었으므 로, 성인권교육 예산을 회복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o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 등 성매매피해 관련 예산을 삭감하였는바, 성 매매피해자 구조지원비를 현실화 하는 등 성매매피해자 지원예산 삭감 을 철회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o 디지털 성범죄 예방교육 콘텐츠 제작, 디지털 성범죄 특화프로그램 운영, 성희롱·성폭력, 가정폭력, 이주여성 폭력피해, 북한이탈여성 폭력피

해 예방을 위한 인식개선 및 홍보 예산이 모두 삭감되었는 바, 삭감 내용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하여 타당성이 없는 경우 예산을 회복할 필요가 있음.

(5대 폭력:스토킹범죄,디지털성범죄,권력형성범죄,가정폭력,교제폭력)

- o 스토킹과 여성 묻지마 범죄에 대한 조치가 미흡하므로, 스토킹과 여성 묻지마 범죄에 대한 치밀한 계획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o 여성가족부 내에서 발생한 스토킹사건과 관련하여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하는 조치가 시행되지 않는 등 미흡한 조치가 이루어졌으므로, 여 성가족부 내에서 발생한 스토킹사건에 대한 처리현황 및 재발방지대책 을 제출할 필요가 있음.
- o 현재 여성폭력 피해자 전달체계는 20~30년 전 구축되었으므로, 5대 폭력 피해자 통합지원을 위하여 가정폭력상담소가 여성폭력 문제에 집 중할 수 있도록 여성폭력 피해자 전달체계를 재정립할 필요가 있음.
- o 여성폭력 피해자를 지원하고 있는 1366(여성긴급전화)의 근거가 「가 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있어 맞지 않으므로, 1366(여성긴급전화)의 근거를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 한 법률」에서「여성폭력방지기본법」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음.
- o 5대 폭력 피해자 지원사업의 예산이 적어 피해자 중심의 효율적인 전달체계를 운영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5대 폭력 피해자 중심의 효율적 인 전달체계로 개편하기 위하여 5대 폭력 피해자 지원사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o 사이버 불링¹⁾(Cyber Bullying)이나 유튜브에서의 직접적 공격이 있을 수 있으므로,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피해 자"의 정의를 스토킹으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사람에서 스토킹으로 직·간접적인 피해를 입은 사람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음.

¹⁾ 인터넷상에서 집단적으로 특정인을 괴롭히는 행위를 말함

- o 반려가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가정폭력·성 폭력 피해자 반려동물 위탁제도는 일부 지자체에서만 운영하고 있으므 로,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자 반려동물 위탁제도를 전국적으로 확대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음.
- o 가정폭력상담소 예산이 감액되어 피해자 지원에 대한 현장의 우려가 있고 2022년 가정폭력 실태조사를 보면 가정폭력 피해자의 피해 인지 및 해결 인식이 낮은 상태인바, 가정폭력에 대한 인식률 제고를 위한 활동을 강화하고 가정폭력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는 등 대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o 스토킹 피해지원 예산의 대부분은 긴급주거지원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 어 스토킹 피해자의 안전을 담보하기 어려우므로, 스토킹 피해자에 대 하여 긴급주거지원 외에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o 여성가족부는 성폭력 실태 조사, 여성 폭력 실태 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나 공중화장실 범죄 예방과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하지 않고 있고 공중화장실 범죄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여성폭력 실태조사를 토대로 지자체에 화장실 안심비상벨, 안심거울 등의 설치를 독려하고 국민안전을 위한 실효성 있는 폭력 예방 방안을 조속히 마련할 필요가 있음.
- o 디지털성범죄특화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상담소와의 협의를 거치지 않고 디지털성범죄특화프로그램 운영을 가정폭력 통합상담소로 이전하는 것은 인원의 부족으로 디지털성폭력 피해자 지원에 공백 등의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가정폭력 통합상담소의 상담원 인력을 확대하고 전문성을 강화하는 등 디지털성폭력 피해자 지원 역량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성희롱·성범죄)

- o 체육계 성범죄가 많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스포츠윤리센터에 체육계 성 범죄를 일임할 것이 아니라 여가부가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역할을 수 행할 필요가 있음.
- o 해바라기센터는 인력부족으로 야간진료가 이루어지지 않는 등 문제가 있으므로, 해바라기센터가 피해자를 위한 원스톱 통합지원센터로서의 역할과 기능을 정립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 o 성범죄자 신상정보 우편 고지제도는 열람여부 확인불가, 집행률 부진 등의 문제가 있으므로, 성범죄자 신상정보를 고지할 때 모바일 고지비율을 대폭 상향하는 등 사업운영 방식 및 예산 집행 방법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음.
- o 여성가족부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고 있는 여성안심귀갓길 제도와 관련한 기본적인 현황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여성안심귀갓길 제도의 전국적인 표준 및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지자체별 여성 안심귀갓길제도 운영 현황을 파악할 필요가 있음.
- o 최근 약물을 이용한 성범죄가 많이 발생하고 있으나, 체계적인 통계 또는 분석 자료가 없어 피해자 보호대책이 없으므로, 약물을 이용한 성범죄에 대한 실태조사 실시, 통계 구축, 정기 점검 및 피해 방지·대 응을 위한 교육 실시를 하고 해바라기센터 등과 연계하여 피해자 보호 및 지원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아동·청소년 성보호)

- o 아동·청소년시설에서 종사자 채용시 성범죄 경력을 조회하지 않은 경우가 많으므로, 성범죄자 취업제한명령 점검주기를 1년에서 연 2회로 변경할 필요가 있음.
- o 신상 등록 대상 성범죄자들이 주소지를 허위로 제출하는 경우가 있고, 허위 주소를 제출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

금을 부과하도록 되어 처벌이 미미하므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예방하기 위하여 관계기관과 협조하여 성범죄자 주소지 허위정보 제출을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보고할 필요가 있음.

- o HIV/AIDS²⁾ 신규 감염이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이므로, 교육부와 협력 하여 청소년들에게 HIV/AIDS 등 성매개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한 교육 을 실시할 필요가 있음.
- o 성범죄자의 아동·청소년 시설 자원봉사는 위험하므로, 아동·청소년 시설 자원봉사자에 대한 성범죄 전과를 조회하고 자원봉사를 제한할 필요가 있음.
- o 청소년유해매체에 랜덤채팅앱이 포함되어 있으나 카카오톡 오픈채팅과 네이버톡은 제외되어 오픈채팅이 성범죄 유인 경로로 대체되고 있으므 로, 온라인 그루밍³⁾ 과 같은 신종 범죄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 보고할 필요가 있음.
- o 여성가족부는 청소년 상담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광범위한 모니터링을 통해 아르바이트 공고 성폭력 사건과 경의선키즈 등 사회 전반의 청소년 성폭력 범죄 노출에 대한 모니터링 대책을 세우고 타 부처 연 계 공조에 대한 방안을 마련하여 보고할 필요가 있음.
- o 청소년이용시설 중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시설인 지방문화원과 문화의 집에 대한 아동학대 범죄자 취업제한 여부 점검 과정에서 문화체육관 광부와 협조가 되지 않아 3년 동안 점검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향후 청소년이용시설에서 아동학대 범죄자 취업제한 여부 미점검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건복지부와 협의하여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²⁾ HIV(Human Immunodeficiency Virus, 에이즈 바이러스), AIDS(Acquired Immune Deficiency Syndrome, 후천성 면역결핍증)

³⁾ 성을 착취하고 폭로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대인관계 및 사회적 환 경이 취약한 대상에게 신뢰를 쌓아 성적 가해 행동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도록 하기 위한 심리적인 통제 기술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

- o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연구소의 연구결과가 정책으로 이어지지 않고 있으므로, 해당 연구결과가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 o 위안부 피해 보호시설에서 국고보조금 목적 외 사용이 발생하였으므로, 윤미향의원과 정의기억연대에 국고보조금 반환 등의 조치를 신속하게 추진할 필요가 있음.
- o 대구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역사관에 대한 지원이 없어 공간 확충이나 사업운영이 어려우므로, 대구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역사관에 대한 예 산 등을 지원할 필요가 있음.
- o 일본군 위안부피해자에 대한 인권유린 상황이 발생하고 있으나 일본군 위안부피해자에 대한 모욕과 명예훼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발의된 「일 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이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지 않으므로, 일본군 위안부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o 정부는 2015 한일합의 당시 일본으로부터 받았던 위로금 10억엔을 반환하기 위하여 2018년 양성평등기금에 103억원을 편성하였으므로, 2015 한일합의 당시 일본으로부터 받았던 위로금의 반환 절차와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고, 해산된 화해치유재단의 해산잔여금(약 57억원)은 전액 국고로 환수할 필요가 있음.

(북한이탈여성)

- o 북한이탈여성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이 많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북한 이탈여성을 성폭력으로부터 보호할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o 북한이탈여성은 일반 이주여성들하고는 다르므로, 탈북여성에 대한 지원사업이 이주여성 지원사업의 일부로 포함되는 것은 맞지 않고 이주여성 지원사업 예산의 5%밖에 되지 않으므로, 탈북여성에 대한 지원

사업을 이주여성 지원사업과 별도로 편성하고 탈북여성에 대한 지원사업 예산을 증액할 필요가 있음.

- o 현재 운영되고 있는 10개의 센터의 위치가 북한이탈여성의 거주현황과 맞지 않고 상담원 부족으로 북한이탈여성 상담서비스가 제대로 이루어 지지 못하고 있으므로, 북한이탈여성 규모를 고려하여 센터를 추가로 설치하고 상담원을 늘릴 필요가 있음.
- o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인신매매가 중국에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인신매매 방지 및 피해자 보호 지원 등에 관한 종합계획에 "탈북민 여 성에 대한 인신매매 실태조사"를 포함하고, 탈북민 여성에 대한 인신매 매 실태조사를 실시할 때 탈북민들을 일선에 배치하여 인신매매 실태 조사를 지원할 필요가 있음.

마. 기획조정실

(공무원 책무)

- o 김행장관후보자 인사청문회시 인사청문준비단의 불성실한 자료제출, 증인출석과 관련한 비협조, 예산결산 현황 등을 파악하는데 있어서 부 적절함 등이 있었으므로, 향후 국회에 자료제출, 증인출석 등과 관련하 여 성실히 협조할 필요가 있음.
- o 새만금 세계잼버리대회 현안질의, 김행장관후보자 인사청문회 등과 관 런하여 기조실장, 대변인이 행정부 공직자로서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 지 못하였으므로, 기조실장 등은 향후 공직자로서 제대로 된 판단, 행 동 및 처신이 필요함.
- o 장관이 청소년·여성·가족의 기능을 강화하면서 여가부를 폐지하겠다고 하는 것은 모순이고, 여가부 직원들은 눈치 보느라고 위축되어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음.
- o 기조실장은 여가부 폐지에 대하여 애매모호한 입장이어서 직원들이 열심히 일을 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기조실장은 공무원으로서 중심을 제대로 잡고 업무를 할 필요가 있음.

2.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워

(김행후보자 재직시 본인 설립회사와 수의계약)

o 김행장관후보자가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장으로 재직할 때 모마일 플 랫폼 기능 개선사업 예산을 4,000만원에서 1,900만원으로 변경하여 본 인이 설립한 회사와 모마일 플랫폼 기능 개선사업의 수의계약을 한 것은 공직자 이해충돌의 소지가 있으므로, 모마일 플랫폼 기능 개선사업이 4,000만원에서 1,900만원으로 변경된 경위, 기능개선 작업 내용 및계약과정을 보고할 필요가 있음.

(공공기관 고충상담원 교육)

o 공공기관 성희롱·성폭력 고충상담원을 대상으로 집합교육만을 실시하고 있으나 고충상담원이 수시로 변경되므로, 공공기관 고충상담원의 교육 공백을 방지하기 위하여 고충상담원 교육을 온라인 교육을 병행함으로써 상시학습 환경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

3.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정책이사 임명)

o 청소년 관련 경력이 없는 분을 정책이사로 임명한 것에 대하여 특혜 의혹 제기되고 있음.

(국립청소년수련시설 개선)

o 코로나19 이후 위축된 청소년활동으로 국립청소년수련시설의 자체수입이 급감하였으므로,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인건비 전액을 국고보조금으로 전환하여 편성하고 인건비로 투입하던 자체수입을 노후 국립청소년수련시설 개보수 비용 등으로 사용하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음.

o 전국 6개 국립청소년수련시설 중 5개 시설이 개원한지 10년에서 20년 이 경과하여 노후화되었고, 국립청소년수련시설의 생활관과 기계설비 는 청소년 눈높이에 맞지 않으므로, 노후화된 국립청소년수련시설과 국립청소년수련시설의 낙후된 청소년 생활환경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청소년활동 프로그램 개발)

o 교육정책 변화를 반영하고 수련시설별 프로그램 운영 역량 및 품질의 격차를 해소할 필요가 있으므로, 청소년 관련기관에 우수한 청소년활 동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보급할 필요가 있음.

4. 한국건강가정진흥원

(경영)

o 청사 이전으로 임차료와 관리비의 지출이 과다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기관장 관용차 렌트비가 월 200만원으로 과다하여 경영이 방만하게 운 영되고 있음.

(양육비이행관리원)

- o 양육비이행관리원에 근무하는 변호사의 처우가 열악하고 변호사 인원 이 적으므로, 양육비이행관리원 변호사의 처우 개선 및 인원 확대, 독립법인화 등을 위한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o 양육비 채무를 불이행 한 경우 운전면허정지, 출국금지 신청은 이행관 리원에 신청하는데 명단공개만 여성가족부로 직접 신청해야 하는 바, 이를 포함한 양육비 이행 확보를 위한 절차 간소화가 필요하고, 실효 성 있는 양육비 이행 촉구 방안을 마련한 필요가 있음.

5.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일본군위안부문제연구소)

- o 일본군위안부문제연구소 소장이 지난 8월 13일 퇴임 후 새로 임명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일본군위안부 문제에 대한 무관심으로 오해받을 우 려가 있으므로 일본군위안부문제연구소 소장을 신속히 임명할 필요가 있음.
- o 일본군위안부문제연구소 연구결과의 내용이 정책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으므로, 일본군위안부문제연구소 연구결과의 내용이 정책으로 이어 질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탈북민 여성에 대한 인신매매 실태조사)

o 탈북민 여성에 대한 인신매매 실태조사를 실시할 때 탈북민들을 일선 에 배치하여 인신매매 실태조사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Ⅵ. 국정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 여성가족부

가. 여성정책

(양성평등)

- o 양성평등문화를 확산하기 위하여 초등교사 성비 불균형 문제에 대한 진단과 개선대책을 마련할 것.
- o 성별균형 포용성장 파트너십을 체결한 기업들의 근로기준법위반, 모부 성제도관련법 위반 등에 대하여 관리하고 제재할 것.

(공중화장실 영유아 시설)

o 사회적 인프라를 아이돌봄 친화적으로 만들기 위하여 공중화장실의 영 유아 시설에 대한 점검을 하고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여 예산을 확보 하여 공중화장실의 영유아 시설을 개선할 것.

나. 가족정책

(아이돌보미 사업)

- o 아이돌보미 공급을 늘리고 부모들의 민간 육아도우미서비스 사용에 따른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아이돌보미 기본 근무시간 보장, 시급 현실화 등 처우를 개선할 것.
- o 국회와 적극적으로 소통하여 아아돌봄서비스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법 안을 처리하기 위해 노력할 것.
- o 2024년 아이돌봄 지원가구를 11만 가구로 확대할 수 있는 가능성에 관한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할 것.

(아이돌봄 통합지원 플랫폼)

o 아이돌봄 통합지원 플랫폼에서 발생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

(한부모가족 지원)

0 저소득 한부모가족 양육비 지원금액을 증액할 것.

(양육비 이행)

- o 양육비 채무자 명단 공개 절차 및 내용을 개선할 것.
- o 양육비이행관리원을 한국건강가정진흥원으로부터 분리하여 독립기관화할 수 있도록 국회 및 관계부처와 적극적으로 협의하고, 양육비이행관리원 소속 변호사의 처우 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이행관리원이 양육비청구와 이행확보 지원 등에 관한 역할과 책무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할 것.

(저출산 대책)

o 저출산 대책에 젊은 세대들이 자녀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으며, 20대 출산율은 꾸준히 감소하고 있는 반면 40~44세의 출산율이 꾸준 히 증가하고 있는 현상을 반영할 것.

(가족센터)

- 0 가족센터에 근무하는 결혼이민자들의 처우를 개선할 것.
- o 시·군·구 가족센터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광역 가족센터를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 o 가족센터에 근무하는 이중언어코치와 통번역사의 처우를 호봉제 적용 등을 통해 개선할 것.

(국제결혼)

o 국제결혼중개업체의 인권침해성 온라인 광고에 대한 상시적인 모니터 링 체계를 구축하고 경찰청과의 협업 등으로 철저한 후속조치를 할 것.

(한국건강가정진흥원 관리)

o 여성가족부는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의 임차료, 관리비 및 기관장 관용차 렌트비의 지출과다 등 방만 운영에 대하여 점검할 것.

다. 청소년정책

(새만금 세계잼버리대회)

- o 새만금 세계잼버리대회 기간에 여가부 공무원의 변산반도 생태탐방관 숙박자 명단을 제출할 것
- o 새만금 세계잼버리대회 개영식 날 온열질환 등으로 참가자들이 쓰러지 는 등 혼란이 발생한 상황에서 장관이 여유 있게 식사를 한 것에 대하 여 해명을 할 것
- o 새만금 세계잼버리대회를 이유로 공무원들이 부적절한 해외 출장을 간 의혹이 있으므로 엄정하게 감사하여 재발하지 않도록 할 것
- o 새만금 세계잼버리대회시 현장 학습활동과 관련된 예산의 업체선정 과 정이나 계약방식의 공정성 준수 여부 등에 대하여 파악할 것
- o 향후 국제행사를 할 때 한의사협회의 한의진료센터 운영 제안을 거절 하여 진료 참여를 배제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할 것
- o 캐릭터 저작물 상품화권에 대한 계약을 체결할 때 업체와 국가에 대한 정산·환수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

(청소년예산 삭감)

- o 삭감된 청소년 관련 예산을 회복하는 등의 대안을 마련하여 보고하고 청소년예산 삭감을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
- o 청소년박람회와 내일이룸학교의 삭감된 예산을 회복하는 방안을 검토 할 것.
- o 관련 부처 및 현장과 협의하여 117학교폭력 신고센터 예산 회복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상담사 처우를 개선하고, 여가부 상담복지센터에서 117학교폭력 신고센터로 파견한 상담사에 대하여 기간제법과 파견법 위반 시비에 대한 명확한 답변과 향후 조치계획을 제출할 것.

(위기청소년 지원)

- o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인력의 이직률, 평균 근무연한, 채용 평균 소요시 간, 처우개선 대책 등을 보고하고,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시설의 노후화 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
- o 청소년사이버상담센터 상담원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교육을 적 극적으로 실시하고 처우를 개선할 것.
- 0 청소년사이버아웃리치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
- o 사이버 상담원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등 위기 청소년을 위한 다양한 상 담사업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청소년 상담 전반에 대한 점검을 할 것.

(청소년유해매체물 규제)

o 청소년 유해매체물 지정 및 관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청소년 유 해매체물 고시를 정비할 것.

(청소년 유해환경 개선)

o 구인광고를 위장해서 청소년을 유인하는 등 청소년이 위험에 노출된 사례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대책을 마련할 것.

- o 경의선 책거리 공원의 청소년 성매매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실태를 파악하고 진행 계획 수립 및 범죄 예방 대책을 마련할 것.
- o 청소년 마약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생애주기별 마약 예방 프로그램, 치료적 사법 정책, 마약 예방 의무교육을 위한 입법 등 종합적 대책을 마련할 것.
- o 청소년유해환경 점검시 적발되는 업소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제재 및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고 지자체와 협조하여 청소년 범죄가 자주 발생하는 지역을 점검하는 등 계획적·체계적으로 청소년유해환경을 점검할 것.
- o 국립 호남권 청소년디딤센터건립사업이 당초 계획대로 완공될 수 있도 록 노력할 것.
- o 국립 호남권 청소년디딤센터와 광주 청소년디딤센터의 차별화된 운영 방안을 마련할 것.

(학교 밖 청소년 지원)

- o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에 학업중단 청소년을 연계하여 학업중단 청소년 이 다양한 지원제도를 안내받고 학업 복귀 및 사회 진입을 할 수 있도 록 할 것.
- o 교육부와 함께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에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사용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할 것.

(청소년회복지원시설)

o 청소년회복센터의 교육프로그램 운영과 인력 전문성 향상을 위한 예산을 지원할 것.

(청소년활동시설)

o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이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인건비 전액을 국고보조금으로 전환하여 편성하고, 인건비로 충당하던 자체수 입을 청소년활동을 위한 사업비 및 안전하고 쾌적한 청소년활동 제공

- 을 위한 노후 국립청소년시설 개보수 비용 등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할 것.
- o 시설 노후화로 인한 국립청소년수련시설 기능저하 문제해결 및 낙후된 청소년 생활환경을 개선할 것.
- o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이 지역별 우수 프로그램을 선발·지원하고 다양 한 채널을 확산시키는 등 청소년활동의 지속적인 개발을 장려할 것.

(탈북청소년 지원)

0 탈북청소년 지원사업을 이주배경청소년 사업과 별도로 추진할 것.

라. 권익증진

(여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지원예산 삭감)

- o 여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지원 관련 예산의 삭감을 복원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 o 여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지원예산 중에서 보조금을 부정수급하지 않 은 사업의 예산을 삭감하지 않고 보충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 o 피해자 지원의 공백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가정폭력상담소 운영지원,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의 예산을 원상복구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 0 성인권교육 예산을 회복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 0 성매매피해자 지원예산의 삭감을 철회하는 것을 검토할 것.
- o 디지털 성범죄 예방교육 콘텐츠 제작, 디지털 성범죄 특화프로그램 운 영등 여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예산의 삭감 타당성을 검토하여 필요예산을 회복할 것.

(5대 폭력:스토킹·디지털 성범죄·권력형 성범죄·가정폭력·교제폭력)

- 0 스토킹과 여성 묻지마 범죄에 대한 치밀한 계획을 마련할 것.
- o 여성가족부 내에서 발생한 스토킹사건에 대한 처리현황 및 재발방지대 책을 제출할 것.
- o 5대 폭력 피해자 통합지원을 위하여 가정폭력상담소가 여성폭력 문제 에 집중할 수 있도록 여성폭력 피해자 전달체계를 재정립할 것.
- o 1366(여성긴급전화)의 근거를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여성폭력방지기본법」으로 변경할 것.
- o 5대 폭력 피해자 중심의 효율적인 전달체계로 개편하기 위하여 5대 폭력 피해자 지원사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것.
- o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피해자"의 정의를 스토킹으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사람에서 스토킹으로 직·간접적인 피해를 입은 사람으로 확대할 것.
- o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자 반려동물 위탁제도를 전국적으로 확대하여 추 진할 것.
- o 가정폭력에 대한 인식률을 제고하기 위한 활동을 강화하고 가정폭력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는 등 대 안을 마련할 것.
- o 스토킹 피해자에 대하여 긴급주거지원 외에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
- o 여성폭력 실태조사를 토대로 지자체에 화장실 안심비상벨, 안심거울 등의 설치를 독려하고 화장실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방안을 조속히 마 련할 것.
- o 가정폭력 통합상담소의 상담원 인력을 확대하고 전문성을 강화하는 등 디지털성폭력 피해자 지원 역량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

(성희롱·성범죄)

- o 스포츠윤리센터에 체육계 성범죄를 일임할 것이 아니라 여가부가 적극 적으로 협조하여 역할을 수행할 것.
- o 해바라기센터가 피해자를 위한 원스톱 통합지원센터로서의 역할과 기 능을 정립하도록 노력할 것.
- o 성범죄자 신상정보를 고지할 때 모바일 고지비율을 대폭 상향하는 등 사업운영 방식 및 예산 집행 방법을 재검토할 것.
- o 여성안심귀갓길 제도의 전국적인 표준 및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지자체별 여성안심귀갓길 제도 운영 현황을 파악할 것.
- o 약물을 이용한 성범죄에 대한 실태조사 실시, 통계 구축, 정기 점검 및 피해 방지·대응을 위한 교육 실시를 하고 해바라기센터 등과 연계하여 피해자 보호 및 지워 대책을 마련할 것.

(아동·청소년 성보호)

- o 성범죄자 취업제한명령 점검주기를 1년에서 연 2회로 변경할 것.
- o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예방하기 위하여 관계기관과 협조하여 성 범죄자 주소지 허위정보 제출을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보고 할 것.
- o 교육부와 협력하여 청소년들에게 HIV/AIDS 등 성매개 감염병을 예방 하기 위한 교육을 실시할 것.
- o 아동·청소년 시설 자원봉사자에 대한 성범죄 전과를 조회하고 자원봉사를 제한할 것.
- o 온라인 그루밍⁴⁾ 범죄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 보고할 것.

⁴⁾ 성을 착취하고 폭로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대인관계 및 사회적 환경이 취약한 대상에게 신뢰를 쌓아 성적 가해 행동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도록 하기 위한 심리적인 통제 기술

- o 여성가족부는 청소년 성폭력 범죄 노출에 대한 모니터링 대책을 세우고 타 부처 연계 공조에 대한 방안을 마련하여 보고할 것.
- o 청소년이용시설에서 아동학대 범죄자 취업제한 여부 미점검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건복지부와 협의하여 대책을 마련할 것.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

- o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연구소의 연구결과가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할 것.
-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 쓰시라고 국민들이 한푼 두푼 모은 성금으로 갈비 사 먹고, 발마사지를 받는 등 말 그대로 파렴치한 횡령범죄를 저지른 윤미향의원이 2심 법원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음. 윤미향 의원은 위안부 피해 보호시설의 인건비로 쓴다며 국고 보조금 6,500만 원을 타내서, 이를 직원들 계좌에 (인건비인 것처럼) 입금한 뒤 '기부' 명목으로 다시 상납받았음. 이는 사기꾼들이 흔히 저지르는 윤미향표 '기부금깡', '국민 혈세깡' 범죄임. 이에, 정의기억연대에 국고보조금 반환, 이자 반환 명령, 보조사업 수행 배제, 제재부가금 및 가산금 징수 등 여가부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처분 조치를 신속하게 시행할 것.
- o 대구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역사관에 예산을 지원할 것.
- o 일본군 위안부피해자를 적극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
- o 2015 한일합의 당시 일본으로부터 받았던 위로금의 반환 절차와 방안을 마련하고, 해산된 화해치유재단의 해산잔여금(57억원)은 전액 국고로 환수할 것.

(북한이탈여성)

- 0 북한이탈여성을 성폭력으로부터 보호할 대책을 마련할 것.
- o 탈북여성에 대한 지원사업을 이주여성 지원사업과 별도로 편성하고 탈

북여성에 대한 지원사업 예산을 증액할 것.

- o 북한이탈여성 규모를 고려하여 센터를 추가로 설치하고, 상담원을 늘 릴 것.
- o 인신매매 방지 및 피해자 보호 지원 등에 관한 종합계획에 "탈북민 여성에 대한 인신매매 실태조사"를 포함하고, 탈북민 여성에 대한 인신매매 실태조사를 실시할 때 탈북민들을 일선에 배치하여 인신매매 실태조사를 지원할 것.

마. 기획조정실

(공무원 책무)

o 향후 국회에 자료제출, 증인출석 등과 관련하여 국회에 성실히 협조할 것.

2.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김행후보자 재직시 본인 설립회사와 수의계약)

o 모바일 플랫폼 기능 개선사업이 4,000만원에서 1,900만원으로 변경된 경위, 기능개선 작업 내용 및 계약과정을 보고할 것.

(공공기관 고충상담원 교육)

o 공공기관 고충상담원의 교육 공백을 방지하기 위하여 고충상담원 교육을 온라인 교육을 병행함으로써 상시학습 환경체계를 구축할 것.

3. 한국청소년활동진흥위

(국립청소년수련시설 개선)

- o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인건비 전액을 국고보조금으로 전환하여 편성하고 인건비로 투입하던 자체수입을 노후 국립청소년수련시설 개보수 비용 등으로 사용하도록 개선할 것.
- o 노후화된 국립청소년수련시설과 국립청소년수련시설의 낙후된 청소년 생활환경을 개선할 것.

(청소년활동 프로그램 개발)

o 청소년 관련기관에 우수한 청소년활동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보급할 것.

4.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양육비이행관리원)

- o 양육비이행관리원이 당초 설립 취지에 맞는 역할과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그 권한과 위상을 실질적으로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이행 관리원 소속 변호사의 처우 개선 등을 통한 변호사 확충 방안을 모색할 것.
- o 양육비 채무자 명단공개 신청을 양육비이행관리원으로 일원화하고, 양육비 이행관리원에 해당 업무를 수행할 인원을 확보하는 등 양육비 이행 확보를 위한 절차를 간소화하고, 실효성 있는 양육비 이행 제고 방안을 마련할 것.

5.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일본군위안부문제연구소)

- 0 일본군위안부문제연구소 소장을 신속히 임명할 것.
- o 일본군위안부문제연구소 연구결과의 내용이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할 것.

(탈북민 여성에 대한 인신매매 실태조사)

o 탈북민 여성에 대한 인신매매 실태조사를 실시할 때 탈북민들을 일선 에 배치하여 인신매매 실태조사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할 것.